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-0168호

「2025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」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5. 27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---

1. 포상 목적

○ 스포츠의 날(10. 15.)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·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

2. 포상 종류 : 체육훈장(1~5등급)*, 체육포장

* 1등급 청룡장, 2등급 맹호장, 3등급 거상장, 4등급 백마장, 5등급 기린장

3. 포상 추천대상

○ **수공기간('25. 9. 14. 기준)**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○ **추천대상자(붙임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충족할 필요)**

- '24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
- 전문체육선수 발굴·육성, 국제대회 유치·개최, 국민체육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

4. 포상 추천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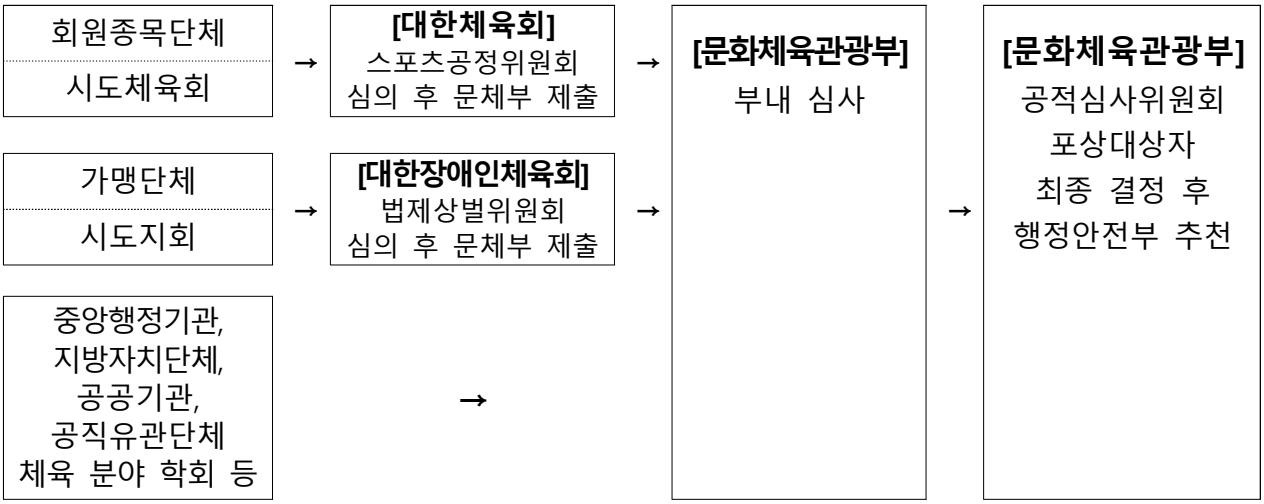

5. 추천방법(접수기관별 일정 및 방법)

가.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

○ 대상: 선수지도자, 전문체육·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

○ 제출방법 및 기한: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고

○ 문의: (대한체육회) ☎ 043-531-0193/ ✉ lek2250@sports.or.kr
(대한장애인체육회) ☎ 02-3434-4513/ ✉ gusrudok@koreanpc.kr

나.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, 장애인체육과

○ 대상: 기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,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, 국민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

-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추천자
- 국민체육진흥공단·한국체육산업개발·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·태권도진흥재단 소속 직원
- 한국체육학회 및 16개 협력학회*에서 추천하는 학자, 연구자

* 한국체육사학회, 한국체육철학회, 한국스포츠사회학회, 한국스포츠심리학회, 한국스포츠교육학회,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, 한국사회체육학회,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, 한국무용학회, 한국운동생리학회(KSEP), (사)한국운동역학회,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, 한국특수체육학회, 한국운동영양학회(KSEN), 한국발육발달학회, 한국체육정책학회

- 그 밖에 체육(학술)단체 추천자

○ 제출방법: 전자문서(공문) 발송 또는 이메일 제출

○ 제출기한: ‘25. 6. 30.(월) 18:00까지 ※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＊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자료는 원본(서명 스캔본) 및 한글·엑셀 파일 함께 제출(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)
- 외국인의 경우 국·영문 공적조서, 이력서(상세 인적사항, 현지주소, 연락처, 학력, 경력사항 등) 첨부 ＊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

○ 문의 및 제출: (체육정책과) ☎ 044-203-3123 / ✉ hyz1128@korea.kr
(장애인체육과) ☎ 044-203-3186 / ✉ nk2352@korea.kr

○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**※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**

제 출 서 류	작 성 요 령
1. (붙임1) 추천대상자 명단 **2. (붙임2) 후보자 추천서** **3. (붙임3)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** **4. (붙임4) 공적조서** **5. (붙임5) 공적요약서** **6. (붙임6) 정부포상 동의서** **7. (붙임7)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** **8. (붙임8) 1등급 훈장 협의서** **9. 기타 공적 증빙자료**	■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■ **소속, 직위 기재 시 전·현직을 구분하고 ‘25.09.14.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** ■ **공적요지**는 반드시 **75자 이내**로 육하원칙에 따라 **핵심내용을 요약**하여 작성 ＊ **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** ■ **공적내용은** 반드시 **2,000자 이상으로** 작성(과도한 띄어쓰기 금지),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**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** ＊ **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, 추상적 표현 삼가,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** ■ **경력사항** 기재 시 반드시 **연/월/일**까지 기입하고, 점수 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(최근순) ■ 과거포상기록은 **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** 수상 사실만 기재 ＊ **행사명, 포상 훈격, 수상 일자를 반드시 기입** ■ **공적기간**은 **경력 증빙자료**를 **근거로 정확히** 산정 후 기재
	■ **기타 공적 증빙자료**는 **경력을 증명**할 수 있어야 함 ＊ **선수경력증명서, 경기실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인사기록카드 등** ＊ **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**

6. 추진일정

○ **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** : ’25.6.30.(월) 18:00까지*

*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6.30.(월)임.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

○ **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** : 7월 중

○ **공개검증 및 범죄·결격사유 조회** : 8월 중

○ **공적심사위원회 구성** : 8월 중

○ **포상 대상자 추천** : 9월 중

○ **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** : 10월 중

○ **2025 체육발전유공 전수식** : 10. 15.(수) 예정

7. 재포상 금지: 이전 포상 **수여일로부터** 금회 포상 **추천일 기준**

○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 기준)될 수 있음

※ 다만,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※ 또한,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, 포장 10년,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

8. 포상 제한

○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○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○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○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,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·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9. 추천 제한

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 형사처분

①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3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4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 등

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동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동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②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
③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③ 다만,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①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②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10. 기타 유의사항

○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('25년 10월)

○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,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

○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·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

○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, 감사원·검·경의 조사·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

○ 외국인은 관계부처(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,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)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, 추천 시 국·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

○ 상훈 관계법령과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